

[서식 예] 대여금청구의 소

소 장

원 고 ㅇㅇ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ㅇㅇ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○)

전화 •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.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대여금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. ○. ○○.부터 2014. 7.
 14.까지는 연 30%의, 그 다음날부터 2018. 2. 7.까지는 연 2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¹)
-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3.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라는 판결을 원합니다.

청 구 원 인

1. 금원의 대여

원고는 2007. 12. 12. 피고로부터 금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6,000만원을 변제기 2010. 0. 0., 변제기까지는 무이자, 변제기 이후 지연이자 연 30%로 정하여

¹⁾ 참고 :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 변경에 따라 약정 이율에서 법 개정일마다 이율을 감축하여야 함.



대여하고, 그와 같은 내용으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받았습니다(갑 제1 호증 공정증서), 그러나 피고는 위 금원을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.

2. 결 론

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6,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 인 2010. 0. 0.부터 2014. 7. 14.까지는 연 30%2)의, 그 다음날부터 2018. 2. 7.까지는 연 2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자제한법에 따른 연 24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

공정증서

1. 갑 제2호증

주민등록초본(채무자)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

각 1통

1. 소장부본

1통

1. 송달료납부서

1통

ㅇㅇ지방법원 귀중



관 할 법 원	※ 아래(1)참조	소멸시효	○○년(☞소멸시효일람표)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	
비 용	·인지액: ○○○원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) ·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		
불복절차 및 기 간	・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 ・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		

※ (1) 관 할

- 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.
- 2.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3.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(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, 그 밖의 채무 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: 민법 제467 조 제1항, 제2항)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